범어자이르네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2654)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20.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유형			해딩	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대구광역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	1일 현재 경상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	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	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	수일 당첨자발표일	서	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20)(금)	2024.12.30(월)	2024.12.31(화)	2025.01.02(목)	2025.01.08.(수)		1.12(일) ~ .01.14(화)	2025.01.20.(월) ~ 2025.01.22.(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어자이르네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33-265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20.(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	일반공급		
2844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울	실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l금 충족	1순위(6개위	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 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 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범어자이르네.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 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Ο		

※ 다.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대구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 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 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4.11.0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2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 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 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30(월)	2024.12.31(화)	2025.01.02(목)	2025.01.08(수)	2025.01.12(일) ~ 2025.01.14(화)	2025.01.20(월) ~ 2025.01.22(수)
방법	■ (PC·모바일)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17:30) 입은행	■ (PC·모바일)청약홈	■ 범어자이르네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 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 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과 - 62226호(2024.12.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4-2 외 2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38층(옥탑 39층) 1개동 총 103세대

[특별공급 48세대(기관추천 9세대, 다자녀가구 9세대, 신혼부부 18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9세대 포함)] 및 부대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백공급면적(m²)	기타						특별공급	급 세대수	1		a = =	최하층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84.9688A	84A	84.9688	33.9669	118.9357	69.1885	188.1242	12.5778	34	3	3	6	3	1	16	18	1
	2024 000727	02	084.9959B	84B	84.9959	34.2221	119.2180	69.2106	188.4286	12.5818	34	3	3	6	3	1	16	18	1
민영 주택	2024-000727	03	084.9909C	84C	84.9909	33.3563	118.3472	69.2065	187.5537	12.5811	34	3	3	6	3	1	16	18	1
' '		04	142.5550	142PH	142.5550	56.5750	199.1300	116.0798	315.2098	21.1022	1	-	-	-	1	-	-	1	-
					힏	† 계					103	9	9	18	9	3	48	55	3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 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벽체,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벽체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및 공용부위 등 면적은 시설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²)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되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은 3층을 말하며, 3층이 없는 경우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합니다.(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688A	084.9959B	084.9909C	142.5550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84B	84C	142PH

						공급	금액		계약	금(10%)			중도금	1 (60%)			잔금(30%)
약식 표기	공급 세대	동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2025-02-17	2025-07-31	2026-02-27	2026-09-30	2027-05-31	2027-10-29	2028-03-31	지정기간
			3~4층	2	296,657,200	752,342,800	-	1,049,000,000	10,000,000	9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314,700,000
			5~6층	2	298,071,200	755,928,800	-	1,054,000,000	10,000,000	9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316,200,000
044	24	101동	7~10층	4	299,768,000	760,232,000	-	1,060,000,000	10,000,000	9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318,000,000
84A	34	2호	11~19층	9	304,010,000	770,990,000	-	1,075,000,000	10,000,000	9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322,500,000
			21~29층	9	306,838,000	778,162,000	-	1,085,000,000	10,000,000	9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325,500,000
			30~37층	8	307,686,400	780,313,600	-	1,088,000,000	10,000,000	9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326,400,000
			3~4층	2	292,980,800	743,019,200	-	1,036,000,000	10,000,000	93,600,000	103,600,000	103,600,000	103,600,000	103,600,000	103,600,000	103,600,000	310,800,000
			5~6층	2	294,394,800	746,605,200	-	1,041,000,000	10,000,000	9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312,300,000
0.40	24	101동	7~10층	4	295,808,800	750,191,200	-	1,046,000,000	10,000,000	9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313,800,000
84B	34	3호	11~19층	9	300,050,800	760,949,200	-	1,061,000,000	10,000,000	9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318,300,000
			21~29층	9	303,161,600	768,838,400	-	1,072,000,000	10,000,000	9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321,600,000
			30~37층	8	304,010,000	770,990,000	-	1,075,000,000	10,000,000	9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322,500,000
			3~4층	2	295,243,200	748,756,800	-	1,044,000,000	10,000,000	94,400,000	104,400,000	104,400,000	104,400,000	104,400,000	104,400,000	104,400,000	313,200,000
			5~6층	2	296,657,200	752,342,800	-	1,049,000,000	10,000,000	9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314,700,000
84C	24	101동	7~10층	4	298,071,200	755,928,800	-	1,054,000,000	10,000,000	9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316,200,000
84C	34	1호	11~19층	9	302,596,000	767,404,000	-	1,070,000,000	10,000,000	9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321,000,000
			21~29층	9	305,424,000	774,576,000	-	1,080,000,000	10,000,000	9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324,000,000
			30~37층	8	306,272,400	776,727,600	-	1,083,000,000	10,000,000	9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324,900,000
142PH	1	101동 1호	38층	1	766,670,800	1,767,572,000	176,757,200	2,711,000,000	10,000,000	261,100,000	271,100,000	271,100,000	271,100,000	271,100,000	271,100,000	271,100,000	813,300,000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법정단위인 제곱미 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충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상기 84A, 84B, 84C 타입의 공급금액에는 PLUS옵션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142PH 타입은 지정된 PLUS옵션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 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 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142PH	합 계
	장애인	1	1	1	-	3
	국가유공자 등	1	1	1	-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	1
	중소기업 근로자	1	-	-	-	1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3	3	-	9
	신혼부부 특별공급	6	6	6	-	18
	생애최초 특별공급	3	3	3	-	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1	-	3
	합 계	16	16	16	-	4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하당 ※ 202 ※ 특별 다! 	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홋 24.03.25. 시행된「주택공급 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2024.03.25. 시행된「주 당첨자발 점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	변수 제한 예외) 당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당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당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구분 발표일이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처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당점될 경) 망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색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보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서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원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적격 처리 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당첨 ■ 최초 ■ 특별 무주택 요건 - 기관 - 노부	험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	발표일이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을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보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 당첨될 경: 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 백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은 부적격 처리 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당첨 ■ 최초 ■ 특별 무주택 요건 - 기관 - 노부	험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	발표일이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을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보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 당첨될 경: 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 백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은 부적격 처리 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 특별 무주택 요건 - 노부	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 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 당첨될 경: 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 백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우 부적격 처리 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 무주택	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 호 합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 반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 특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 백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 무주택	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 호 합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 반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	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 로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 백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 기관 요건 - 노부	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	후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p.2 참조)						
■ 최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① 추 ② 추 ③ 주 - 노부 ① 추 ② 추 자격요건	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 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경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 심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 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 당급 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 J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 ¹ 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	성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 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	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네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 청약통장 불필요)							
	구 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1 >1 >1	국가유공자 등 [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추천기관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 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 ¹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	라도 입주자도 경 이상(태아, 를 말하며, 자		원이면 신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대구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경상북도 거주자) ■ ②배점									
	my	ᄎᄢᅯ	배점기준		ш¬					
당첨자	배점항목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					
선정방법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구분					내용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 8(3)	3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대구광역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M GTATGOTE EMAN ATOM ATTE ATE TO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	이나 가족관	 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	우 자녀기	· · · · · · · · · · · · · · · · · ·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2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이나 주민등	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	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비고	■ 자녀기준 -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지 (임신·입양) 입주 시 출신 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시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	l청자의 전혼 사의 전혼자녀 1 및 입양 관 서, 가족관계경 기간 개시일까	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겨 (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여 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여 등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에서 출산 하며, 편 태 관련 (경기간 개/	안·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 인단서 등으로 판단 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8세대

		내용
- 신혼부부는 혼인신 ※ 단, 혼인기간 중 재 무주택기간이 ■ 혼인기간이 7년 0 ■ 「신혼부부 주택 특	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4	내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	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_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티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②순위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	당지역 거주자 (대구광역시) 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지	
2순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대구광역시) → 기타지역	벽 거주자 (경상북도)
* 현재 혼인관계인 - (②순위 판단 시)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0	
	- 신혼부부는 혼인신 ※ 단, 혼인기간 중 재 무주택기간이 ■ 혼인기간이 7년 0 ■ 「신혼부부 주택 를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특구분	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2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1단계 (15%) 2단계 (15%) 3단계 (35%) 4단계 (35%) 4단계 (15%) 5단계 추첨공급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 ②순위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내용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 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년월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2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득구분	비율			소득	금액		
	ᆿᆍᇎ	비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 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세 따른 보험료 부고			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기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	다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역	 백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	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 「농지법」 등재된 * * 「초지법」	경우는 제외 1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경우 1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나 동일한 주소인 경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 네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0 . 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 모든 세대구성원이 ※ (예외) 2024.03.25. ■ 「주택공급에 관한 구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아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더 - 나. 1인 가구(혼인 중 * 1인 가구는 추첨제 * '단독세대'란, 단독사 한하여 신청가능힘 * '단독세대가 아닌 등 ■ 「생애최초 주택 특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 과거 1년 내에 소 ** 소득세 납부의무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구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에 기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등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 보신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특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경우를 말함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 당하는 분 액 이상)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는 분)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 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특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 난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의 이력은 배제합니다.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본됨.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는 분 분 연 이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①소득구분 다게	A = 2 H		내용				
	단계	소득구분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El 74	++177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거주자 (대구광역시) → 기타지역	거수자 (경상묵도)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u>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u> 사업주	트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	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구분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년월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2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내용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60% 이하 160% 초과하나,		소득금액						
	포국 구 문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 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 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 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내용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 건축물가역 주택	변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경 * 「농지법」 등재된 경 * 「초지법」 소재지와 * 공부상 도 * 종중소유 경우로서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 · 동일한 주소인 경우 E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	택자이어야 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테28조제1항의 1순위에		록표등본에 등재되여	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한 분	
당첨자		대구광역시) → 기타지역 한 규칙」별표1(가점제 전 1될 수 있으며, 그 책임원	격 거주자 (경상북도)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 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0 2 4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8 20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
				8		2
			3년 이상 ~ 4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_ 3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 i
	②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
	Ø + 6/1 ¬ 1] 33	2명	15	6명 이상	- :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
		17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 levic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	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	인기간은 소위기산익을 기	기주으로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	숙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_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				
			· · / / · · · · · · · · · · · · · · · ·	pl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1		

4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구분	내용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u>خ</u>]	g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북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당첨자 선정방법

7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84B/84C	40%	60%
전용면적 85m² 초과	142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 및 조태기 기	22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①무주택기간	3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내용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 F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본인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 01 T T T T T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기념기단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ull O Tl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2 + 3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구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내용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 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구분	내용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단, 청약저축에서 총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시 네디션 3 시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구기시규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메구시 포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또는 영주증을 말함)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서비스 이용은 선택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대원의 청약자격(: - 세대원 등록방법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흠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1.08.(수) ~ 2025.01.17.(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1.0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J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 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 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2025.01.12.(일) ~ 2025.01.14.(화)	범어자이르네 견본주택	서류 제출 시간 및 방법은 별도안내 예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3)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서류	루유형		바그기즈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0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공통서류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0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0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0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및 자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ᇂᇬᅰᅎᄜᆡᄺᆘ	청약자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О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출산 이행 각서	배우자	• 임신의 경우
		0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및 혼인여부 확인, "상세" 발급
신혼부부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특별공급 	0		소득증빙서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서투	류유형				
구분 필-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U	기그런게ㅎㅎ시(ㅎ세)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 청약자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출산 이행각서	배우자	• 임신의 경우	
		0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노부모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_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부양 특별공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_ _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_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 증빙서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0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717 27110 071(0711)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겨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_ - 청약자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출산 이행각서	바우자	• 임신의 경우	
		0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0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0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신청 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추가서류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0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통보를		0	헤다 주태에 대하 스며지크	해당주택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당모글 - 받은자 -		0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0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주민센터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책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주민센터 ③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주민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근 로 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ල රා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자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내용 참조
202	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 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① 해당직장/세무서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ᆸᅙᄭᅲ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구분	제출 필수	유형 추가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2T	(해당자)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공통서류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u>29õ</u>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0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0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제외
	0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제출	제출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경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О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추가서류		O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점제, 예비입주자)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출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0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추가서류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0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통보를		0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농모들 받은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0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저위	· · ·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다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중	기접수일 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당 동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 명의변경일	매대금 완납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8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추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보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페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일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 권 1억성당)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건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0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2이 되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0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이에 따른 가격일 6번으로 5억원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0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 주택 또는 분양권등 3억절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50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 주택법 보다 전체 3제 3제 3제 3점 3점 3점 3점 2단 본 보안권을 20 주택법 또는 전체 30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 주택법 보다 보안권을 30 점을 20 주택법 20 등의 30 점을 20 등의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m²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m²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은 말한다) 정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운 거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1.20.(월) ~ 2025.01.22.(수) (10:00~16:00)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3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1차 계약금	· MHI ¬	504-10-618221-8	한국자산신탁(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 iM뱅크	세대별 가·	생계좌 부여

- 계약체결시 세대별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해당계좌는 상기 모계좌(iM뱅크 504-10-618221-8, 한국자산신탁(주))로 자동이체되어 관리가 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1동 301호 홍길동: 1010301홍길동)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또는 전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0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0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0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청약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대리불가)
	0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0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모두 무효 처리)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 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 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 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 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 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 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또는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 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 책, 금융 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함. 또한, 다주 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간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알선한 대출취급 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실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 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 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 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와 시공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 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 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 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PLUS옵션

- PLUS옵션 설치 위치 및 폼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PLUS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PLUS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분양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PLUS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PLUS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PLUS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PLUS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PLUS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LUS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42PH 타입은 주방 Style Up, 인테리어 Style Up, 개별 PLUS옵션(현관중문), 가전 선택품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내역

구분		설치내역				
	84A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천장, 상부 플랩장(수동), 수입 주방가구도어(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유럽산 하드웨어, 독립형후드, 빌트인콘센트, 냉장고장(가전 소물장)				
	84B	루버천장, 상부 플랩장(수동), 수입 주방가구도어(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홈바)+유럽산 하드웨어, 고급형 홈바(유리 상부장+서랍형 하부장,키큰장),				
주방 Style Up	04D	독립형후드, 빌트인콘센트, 냉장고장(가전 소물장)				
	0.46	루버천장, 상부 플랩장(수동), 수입 주방가구도어(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홈바)+유럽산 하드웨어, 고급형 홈바(유리 상부장+서랍형 하부장,키큰장),				
	84C	독립형후드, 빌트인콘센트, 냉장고장(가전 소물장)				

• 냉장고장의 경우 오브제 전용(BC4S1AA1 + BC3K1AA1) 사이즈 이며, 입주자가 직접 가전 설치 시 제품 사양에 따라 돌출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

■ 공급대금

구분	84A	84B	84C
주방 Style Up	7,520,000	9,920,000	10,400,000

인테리어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내역

구분		설치내역				
	84A	유럽산 포세린타일(복도3면,소파뒷벽),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픽처레일(복도 유럽산 포세린타일 시공부위), 리니어 조명(아트월, 소파뒷벽 유럽산 포세린타일 시공부위), 시트패널(현관,복도,거실,주방), 특화조명(거실,침실), 욕실안전 유도등(가족욕실, 부부욕실)				
인테리어 Style Up	84B	유럽산 포세린타일(복도1면,소파뒷벽),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픽처레일(복도 유럽산 포세린타일 시공부위), 리니어 조명(아트월 유럽산 포세린타일 시공부위), 시트패널(현관,복도,거실,주방), 특화조명(거실,침실), 욕실안전 유도등(가족욕실, 부부욕실)				
	84C	유럽산 포세린타일(복도1면,소파뒷벽),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픽처레일(복도 유럽산 포세린타일 시공부위), 리니어 조명(아트월 유럽산 포세린타일 시공부위), 시트패널(현관,복도,거실,주방), 특화조명(거실,침실), 욕실안전 유도등(가족욕실, 부부욕실)				

■ 공급대금

구분	84A	84B	84C
인테리어 Style Up	3,960,000	3,380,000	3,340,000

[※] 각 타입에 따라 설치 품목 및 위치가 일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PLUS옵션 및 공급대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대금

유상옵션품목	84A	84B	84C
현관 중문 [자동 3연동슬라이딩도어(2Sliding+1FIX)]		2,100,000	
침실1(안방) (슬라이딩도어 붙박이장)		2,460,000	

가전 선택품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오브제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 + BC3K1AA1	5,800,000	냉장,냉동 + 김치
	광파 오븐	LG전자	MZ385EBTAD	540,000	하부 드로워 포함
84A, 84B, 84C	식기세척기		DIE6PT	1,450,000	가구부착형 (14인용)
			BEI3GQBI	920,000	인덕션 3구 (블랙)
	인덕션 전기레인지		BEI3WWQLBI	1,140,000	인덕션 3구 (화이트)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Premium UVnano)

(단위	. 유	1 / 5	さ ナノトノ	서서	포함)	П

품목	타입	선틱	박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선택1	2대	거실, 침실1	4,140,000	
시스템 에어컨	84A, 84B, 84C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3	5,680,000	LG전자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51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및 안방용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은 제외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시스클라인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선	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시스	84A, 84B,	선택1	1대	침실1	840,000	
<u> </u>	84C	선택2	35#	침실1, 침실2, 침실3	2,520,000	자이에스앤디(주)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전열교환기 설치)과 면한 침실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시스템에어컨이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PLUS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일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외번호	예금주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NU KOH	A 취 O 헤	계약금	1010-2648-2335	TI OLONI A ONELIZA	케스트니			
PLUS옵션	PLUS옵션 수협은행	수협은행 중도금, 잔		호실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계약 시	2025.07.31.	입주지정기간

- ※ 상기 계좌는 PLUS옵션 납부계좌(모계좌)로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라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모계좌(수협은행 1010-2648-2335, 자이에스앤디(주))로 이체·관리됩니다.
-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분양사무실 현금 수납 불가)

- ※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서에 납부계좌, 납부금액, 납부일정 별도 안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1동 301호 홍길동: 1010301홍길동)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PLUS옵션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시공사(자이에스앤디(주)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PLUS옵션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공사(자이에스앤디(주))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PLUS옵션(유상옵션)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PLUS옵션(유상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PLUS옵션(유상옵션)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PLUS옵션(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PLUS옵션(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PLUS옵션(유상옵션) 공급 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함. (PLUS옵션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PLUS옵션(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전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PLUS옵션(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PLUS옵션(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계약체결 전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표현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LUS옵션(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일부 품목이 구현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LUS옵션(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계약자 안내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입주예정월: 2028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 한 날부터 45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지하주차장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호의2

•지하1층의 주차장차로와 주차장출입구부터 경사로의 높이는 2.3m이상이며 주차면의 높이는 2.1m이상입니다.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0.179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부위, 설치개수 등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128****112)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기게ㅂㅁ서게기즈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4-104-0002600호	78,296,4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중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 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 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수강, 시행수탁자 한국자산신탁㈜ 및 시공사 자이에스앤디㈜,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 간 체결 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수강이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수강"이 "한국자산신탁㈜"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수강이고, 한국자산신탁㈜는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공동주택 공급대금은 반드시 '한국자산신탁(주)'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후 불문한 하자 및, 오시공/미시공 등을 포함)은 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수강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공급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수강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 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수강이 부담합니다.
- 한국자산신탁㈜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등의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인허가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호	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서한컨설탄트 주식회사		
금 액	1,719,300,000	1,274,9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한국자산신탁㈜	㈜수강	자이에스앤디㈜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70111-0794322	110111-193455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5, 4층 402호(범어동)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0층 (충무로3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чв
공통 사항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에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전형 또는 미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주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채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천주에, 카탈로그 등에 기재일 마감제 수준이상의 번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제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제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주자 모집공고로 및 방면계역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인주자 모집공고로과 방안계약서 내용이 우선 작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등법 시행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형 제3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양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에, 오피스열의 독성상 충간, 세대 간 소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를 단지는 해계계에 및 등 조원으로 인한 요절과 입면의 장식, 지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건물 상호 간섭, 일조, 조망, 프라이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건본주에 예설지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성목과 조기 활작을 위해 석세 시 뿌리분에 감사진 청사, 고구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준지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 단지 당치 및 실형 등은 권계기관의 심의 결보과 및 내부 이건에 따라 공급 시의 당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수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하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크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권선생활시설을 별로 보면의 발생보면서 발모하는 교 향후 대지지본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정할 수 없으며 지상부의 조경, 보도,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료서 업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압주민에게 인제된 이후 발생하는 육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체임 및 이에 따른 부탁비용은 압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으로 인한 숙외공간에서의 안찬시고 발생 시에는 연구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개인 부주으로 인한 숙외공간에서의 안찬시고 발생 시에는 연구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전국 설계의 업계한 반경에 대한에 발대 안에 사업이 되는 도시에 따라 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업계한 반경이 반경에 대한어 사업자의 결심에 따라 내 가만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면 접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구의 기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전에 가입하는 반경에 다르며 바꾸 생물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건축 실계로 등에 대한어 보급에 대한어는 보장이 따라 보고 있습니다. • 전대 대 경면도 인칙 및 한대, 색제에 대한 디자인 일제 관리 도시 보안되는 전원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보고 있는 건의 기계 보고 있는 건의 등에 대한어는 대중에 따라 보고 기계 사업을 되어 따라 본 계약 물건이 단지 내지, 단지 내 도로 선명, 조심(수목, 시설을 기계 소급 등이 있습니다. • 전경과, 도로 기부제님, 관련 법과의 보험 도시에 다리한다는 내용(세대 내의 공유부분 시설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을 인 전후 취취 안하고 보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주면 변경을 사업수에 되어 보다 문제 관리를 모하면 함께 문제 관리를 보려 있습니다. • 관리를 경과 모리 기계 관리를 구성하여 설계 전기 대한다는 내용(세대 내의 공유부분 시설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을 인 전후 전기 관리를 무한 변경을 시킨하고 요리하고 있습니다. • 관리를 경과 및 기계 대한어 보급 구설을 보려 있습니다. • 관리를 시설을 되었다면 공급 관계 관리를 보려 있습니다. • 관리를 경과 도급 기계 관리를 보다 있습니다. •
	인•허가	 각종 홍보물은 2024년 11월 건축허가 설계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초 건축허가일이 2022년 09월 06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본 단지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I	
		• 인·허가 관청에서 본 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 도로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각종 도로 시설물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빛 공해, 시선차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단지 주변에는 동대구로 등의 도로가 접하여 있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도로 기부채납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출입구 등에 경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경계부는 당사 홈페이지 및 단지모형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허가상 단지 경계 내 일부 도로에 대해 무상점용 및 사용권을 수성구청에 제공하며 단지내 보도의 유지관리의 책임은 단지내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단지 북측 동대구로 일부구간은 양방통행으로 통행체계가 변경될 예정이고 포장의 종류,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 단지 내 외곽은 별도의 휀스등의 구분이 없고 보행로로 조성되어있고 외부인들도 통행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학군배정 유치원생 : 5권역(수성권) 내 분산배치 가능 초등학생 : (학생배치 가능 여부) 범어초 적정배치 불가 중 학 생 : 2학교군(수성구) 내 분산배치 가능 고등학생 :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배치 가능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지현황	 ● 본 아파트는 주상복합 건축물로 1층에 별도의 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외부 사인물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 하부 근린생활 시설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냄새,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과 2층에는 페기물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함, 발전기용 급배기 시설, 제연휀룸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 제연휀룸 등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보도, 출입구 측면에 D.A가 설치되며 시설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형태, 높이, 색상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호실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합니다. ● 계단실 내 창호는 고정창으로 적용되며, 향후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지상2층에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인·허가상 주거(아파트)와 비주거(오피스텔)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시설을 공유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나, 입주 후 입주민대표회의 및 관리단의 결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 2층 지봉일부에 부대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및 시야간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설 계, 디자인, 마감)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중심상업지역에 건립되는 건축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세대가 속한 동의 위치, 층, 향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날수 있고, 일부 세대는 하루 종일 일조가 되지 않는 영구음영 세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동 명칭 및 호수는 추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보행로, 조경시설, 옥상정원,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인명구조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보행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한전패드, 소방관련시설,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 및 실외기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 단지 내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 진출입구는 비상차량 진출입구로 인허가상 일반차량은 오전, 오후 첨두시만 진출이 허용 되므로 평상시에는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외부인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합니다. • 옥상에는 통기 배관, 연도, 정화조 배기 및 팬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 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저수조, 제연휀룸 등이 설치되므로 가동 시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및 사인물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탑라이트 등), 조경 디자인, BI 사인물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는 석재 및 도장류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도장류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형태, 크기, 배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외관계획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외벽 일부구간에는 금속, 유리(커튼월 룩)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된 커튼월룩의 형태 및 크기는 상품개선, 안전,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고, 환기, 설비배관 등이 설치되는 부위는 유리 외 다른재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구간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됩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욕실배기, 보일러 연도 및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벽에 환기 설치 및 배관 돌출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로 근로자휴게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및 옥상정원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은 인허가상 분리되어 있으나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지상1층에 설치되고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속동(관리사무소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각종 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기구의 사양 및 종류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기본 사양에 따르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 제외한 부대시설)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운영방안은 추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 지상 20층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됩니다. • 지상 20층 (피난안전층)에 저수조, 제연휀룸 등이 설치되므로 가동 시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하층부 구조 및 형태변경으로 발생하는 외부공간은 출입 및 사용이 되지 않는 공간으로 통행, 물건적재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입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붕층에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됩니다. • 공용부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배관점검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IT층은 설비공간 및 소방활동을 위한 층으로 입주민은 사용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가 정차하지 않습니다. 비상시 또는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동선으로 별도 마감 및 디자인 조명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3층 일부세대는 관리자용 동선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부 엘리베이터 및 설비공간등으로 소음, 진동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옥상층의 옥외정원이 아닌 외부공간은 일부세대에서 점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동선 외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옥상층에는 소화수조 및 소방펌프가 설치되고, 이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건물 지붕 바닥마감은 상품성 개선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개인이동수단 보관소 등의 외부 디자인 및 형태는 인허가조건 및 상품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의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설비 및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사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시스템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조경수전, 주차장비상용급수전, 재활용보관창고청소수전 등의 설치로 유지관리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공동주택 142대, 오피스텔 86대, 근린생활시설 1대, 총 229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주차장 • 도로현황, 현장여건등에 의하여 시공 시 주차장의 차로, 주차구획, 경사로 폭등 주차장의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지하3층~지하6층)과 오피스텔(지상1층~지하2층) 주차구획은 구분되어 설치되어있으며 공동주택용 주차장은 오피스텔 주차구획 통과 후 설치되며 별도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주차구획이 구분되어 설치되었으며 각 지하 해당층에만 엘리베이터가 정차합니다.

		• 오피스텔의 계단실은 피난을 위해 지하 6층까지 설치되나 비상시 이외에는 공동주택에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획은 지상1층에 설치되어있으며 오피스텔 지상주차구획과 같이 설치됩니다.
		• 지하 주차장은 주행유효높이 2.3m로 계획되어 있어 택배차,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분리되어있지 않으며 통행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열선 등의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동절기 차량의 미끄럼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내 조업주차구획 및 재활용보관창고, 차로 및 보행로 등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관리 및 점검을 위한 동선으로 일부 이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전기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정화조 등은 지하 6층에 설치되며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12개소(아파트 : 급속1/완속6 / 오피스텔 : 완속5)가 설치되며, 인허가 사항에 따라 총 급속, 완속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오피스텔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
		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오피스텔용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공용으로 지상1층 주차장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오피스텔과 지상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 오피스텔과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일부는 아파트, 오피스텔 및 부속시설의 배관 및 설비점검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별 조리를 위한 주방이 입점시에는 주방후드, 덕트, 자동댐퍼등 연기배출시설과 소방법규에 따른 소방시설을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에는 기본 급수 및 배수, 가스 시설이 임의적인 위치에 설치되며 추후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내부 배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가스, 오배수, 우수, 급수),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점포별 급수 공급배관은 메인배관까지만 시공되며 계량기 및 개별 배관 설치는 입점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 가스 주배관으로 부터 입점내 가스배관공사는 계약자 혹은 입점자의 용도에 맞게 시공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공사비는 계약자 혹은 입점자의 부담임.(가스 계량기 설치 입점자 업무)
		• 호실별 개별 주방 배기설비 설치시에는 인접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소음전달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에 따라 설치가 제한 될수 있습니다.
		• 호실별 에어컨 설치(실내기+실외기) 시에는 인접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소음전달 및 열풍에 의한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냉매배관은 입점자 공사 임
		│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역성을 선용한적, 중립한적 및 계약한격의 모두넘 이에 웃자는 물제 자동 자 물두 한성을 두 ᆻ답이다. • 아래 해당타입은 전용면적에 초과 발코니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4m²B(5.0050m²), 84m²C(7.1898m²), 142m²PH(12.2440m²)
		• 이대 에이어 다른 현충한국에 포함 필요적한국에 포함되어 있다니다. • 아내 B(3.6030H), 아내 C(7.1636H), 142H F1(12.2440H)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 (142m²PH : 2,600mm)로 시공되며, 실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어피트 세대의 전형 높이는 2,500mm (142mPh : 2,600mm)도 지능되며, 할사랑 시 미국세의 승규에 따다 합창 어용인도 대에 오차가 할정할 수 있답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납구 시 세네 네에 엄크를 가구(경봉, 붙박이경)를 개발적으로 구가 들시 시 들이 들극아서 들시아가 마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단위	평면	• 세대 대의 귀시에 따다 계곡사가 의용하는 용용(뉴식)의 가전제품(용용고, 심사용용고, 제곡기, 신호기 등) 및 기구 등이 곡, 표이 등의 사이도 한아여 매시가 물가될 구 -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세대	ゔ딘	
		• 현취세대는 연판, 연판정고, 필외기일, 다용도일, 아양적 피한구역 중에는 마락한당이 시중되지 않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욕을 마락에는 현영고일이 열시되다 욕소 및 사눠무스 마락는 세외됩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무 역세는 마음 품일 욕모들 위하여 세표(콘크리트, 조역, 성당역세), 일이 및 무께가 면정될 구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세대선 역세에는 중사를 위한 적립공도가 열시될 수 있으며, 적립 전묘 후 조직 또는 선적역제도 마침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스베인의 콘의치는 To ofo의 높이는 한경을 두 했답니다.
		_ 40 _

T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국용하게 많은 글로국은 본 최구용단프로서 단용 사용 및 단글제가 글제되게 많프프로, 대최구 단도시에 의학하 글로 및 글용에 의단 국음 단용하 글용글 구 였트의 로단단 글 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째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창호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내부폭의
	러는 데는일
	프로마트 크로프트 = MB 13. •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과 사내가의 교실되다 본지되는 당한 것 같고 가내가 한국 본의 가는 내 한테당 가 본 기계한 것은 사기본은 당 가가 본당을 가 했고 1, 당한한지 것 같은 고 가당 됩니다의 한당한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발코니	지수는 다른 그는 다른 마다 이 그는 다른 다른 그는 다음으로 보장 때 하는 다른 다음을 다 있는 다음을 다 있는 다음을 다 있는 다음을 다 있는 다음을 다 하는 다 다음을 다 수 있다.
	- 침실1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인접세대(하부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출입용 분합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의 출입문과 전동식 빨래건조대는 간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142㎡PH 타입의 발코니-2 바닥마감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0.±	• 하향식 피난구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고정창으로 개폐가 불가능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공간과 실외기실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1앞 발코니 외부창호의 높이는 현장 여건 및 상품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사양은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사이즈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142m²PH 타입 세대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최사츠 오이고가에는 통기 배과 미 여드가 나츠 서비된 수 있으며 ㅈ마귀 ᄉᄋ지도 내내 나새한 치체 들이 피해가 바새한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용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옥외공간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대해시는 합부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합부사는 목외중간 성부의 어용어중, 성부, 매부에 대한 기본 설계조신에 대해 신문가의 확인을 받는 후 시중해야하며 중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한쪽에 포함되지 않는 목죄용인은 전폭합성 경구 시중을 들시할 수 없습니다. • 옥외공간 상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외공간 영구에는 목약을 당시를 위한 시골물이 계획을 수 있으며, 물시물게 시 형데, 그기, 위치, ㅠ수 등이 한경을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녹외중인에는 구우 규칙모구들 위인 고도 역합시 근도자의 인언을 고려야여 인언고나 복는 인언고나 제일중 매합일을 중이 시중을 구 ᆻ합니다. • 프라이버시를 위해 옥외공간에 칸막이가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 위치, 재료,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 프로이어시킬 마에 국과중단에 단국에가 걸시킬 + ㅆ프의 크기, 마시, 세표, 당시단, 국중 중단 단중될 + ㅆ답되되.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0 -
	- bu -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한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 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하이브리드 전기쿡탑) 적용으로 인해 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업(특화) 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업(유상) 옵션 선택 시 타입별로 주방 천장의 형태가 다르니 카탈로그 및 CG를 확인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힌지 및 레일 등)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설치 시 필히 실측 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패널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는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타일의 재료적 특성상 각 장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시공되는 바닥타일의 경우 사선방향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시공 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알루미늄 슬라이딩도어는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자동중문 옵션은 주택형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가구하드웨어(가구의 헌지 및 레일 등) 및 악세사리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위치 및 사양은 동급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구현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되는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의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 설비

마감재

	• 단위세대 실외기실 내부에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과 배관신축이음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상제공기간 이후 유료로 사용가능하며,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유상) 옵션 선택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장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현관창고,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 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모집공고문 및 상담을 통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구현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평면 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견본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 시에도 설치 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인 84m²C, 142m²PH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m²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립세대 전타입은 스타일옵션 적용으로, 스타일옵션 선택 전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등록업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업등록번호	서울 07001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사업방식	관리형 토지신탁
소유권 관한 사항	대지 소유권 100% 확보	소유권 이전 형태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분양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착공일	2024.12.13.

■ 분양대금 관리자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범어자이르네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3 ■ 사 업 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4-2 외 2필지

■ 홈페이지: http://범어자이르네.com

■ 분양문의: 1833-2654

